

전 속 중 개 계 약 서		
의뢰내용 매각·매입·임대·임차·기타()		
중개의뢰인(갑)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별표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중개업자(을)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.		
1. 을의 의무사항		
①을은 갑에게 문서로서 2주일에 1회이상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.		
②을은 중개대상물을 ○○부동산거래정보망에 이 전속중개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		
③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·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		
2. 갑의 의무사항		
다음의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. 다만 ③의 경우에는 법정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을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비용에 한한다.		
①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 외의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		
②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여 거래한 경우		
③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		
3. 유효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. ※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, 갑과 을의 협의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.	
4. 중개수수료	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갑은 거래가액의 () % (또는 원)을 중개수수료로 을에게 지급한다. ※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.	
5. 중개의뢰인에 대한 피해배상 규정	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피해를 배상한다 1)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다징수 : 차액환급 2)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·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: 손해액 배상	
6.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		
7.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·날인한 후 쌍방이 1통씩 보관한다.		
년 월 일		
계 약 자		
중개의뢰인(갑) : 성명	서명 또는 인	주민등록번호/외국인등록번호
주소/거소		전화번호
중개업자(을) : 성명(대표자)	서명 또는 인	주민등록번호/외국인등록번호
상호(명칭)		전화번호
주소/거소(주된 사무소)		등록번호

(뒤 쪽)

※ 중개대상물의 거래내용이 권리를 이전(매각·임대 등)하고자 하는 경우 "I.

권리이전용(매각·임대 등)"에 기재하고, 권리를 취득(매입·임차 등)하고자 하는
경우 "II. 권리이전용(매입·임차 등)"에 기재함

I. 권리이전용(매각·임대 등)

구 분	매각·임대·기타()						
소유자 및 등기명의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/ 외국인등록번호				
	주소/ 거소						
중개대상물 의 표시	건물	소재지				건축연도	
		면 적	m ² 평	구 조		용 도	
	토지	소재지				지 목	
		면 적	m ² 평	지구지역		현재용도	
	은행융자·권리금·제세공과금등 (또는 월임대료·보증금·관리비등)						
권리관계							
규제 및 제한사항							
중개의뢰 가액		원	기	타			

II. 권리취득용(매입·임차 등)

구 분	매입·임차·기타 ()	
항 목	내 용	희 망 정 도
희망물건의 종류		
취득희망 가액		
희 망 지 역		

기타 희망조건

<별표>중개수수료 요율표(특별시·광역시·도조례의 중개수수료 요율표 수록).

210mm×297mm

(보존용지 (2종) 70g/m²)